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76
------	------

제출일자 : 2021. 4.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2. 27. ~ 2021. 3. 18.): 의견없음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3)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5)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반영(여성가족과)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기금의 설치 및 용도 (안 제3조~제6조)
-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안 제7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8조~제9조)
-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 등 (안 제10조~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나. 예산조치: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 참석수당 지급.
- 다. 합의기관: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역환원금”이란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민자유치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금천구에 환원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지역환원금
3. 기금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지원 및 경상경비 지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과급효과, 주민의 추진의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도시계획업무 담당팀장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업무 담당국장, 교통건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일반회계 전입금, 각종 수입금을 통한 운영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서영완
연 락 처	2627 - 1555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